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2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3. 2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3. 21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0. 3. 29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자 및 대규모 사업장의 보건교육실시 의무폐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기간 조정 : 7일이내 → 15일이내에 독촉장 발부 (안 제4조제2항)
- 나. 금연을 위한 조치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정비(안 별지 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조정과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대규모 사업장의 보건교육실시 의무사항 등을 타법령 이관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른 군민의 재정부담을 고려 인근 시군의 형평성 또는 부과산출 근거 등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과태료의 인상 및 신설된 사유는
- 답 : 상위법에 의거 인상 및 신설하였음.
- 문 : 우리군에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 답 : 공공시설, 목욕탕 등에 기 설치되어 있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0. 3.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